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1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14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778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06938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등기기록상 성명: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필

판 결 선 고 2020. 7. 9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77816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가 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금1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고 보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영수증 - 각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에 작성된 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피담보채무의 원금 중 15, 000, 000원을 초과하는 원금과 2014. 3. 31. 까지의 지연손해금전부는 2014 년에 작성된 위 각서에 의하여 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사표시 해석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가 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 5. 27.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M(이하 ...' 라고 한다) 에게 양도한 다음 2019 . 5. 28. 이 사건 가등기를 M 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가 등기에 관한 권리가 M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의 피고 적격은 M에게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와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피고는 원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M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변론과정에서 알리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민사소송법제82조제1항에 따라 M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기회가 없었는 바, 환송후원심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송인수를 신청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함을 덧붙여 둔다).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상고 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주심 대법관 권순일대법관 이기택대법관 김선수